

[별표 17] <신설 2008.11.26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84조제1항 관련)

(단위: 만원)

연번	위반행위	관련 조항	총 포		도검	화약류	분사기	전자 충격기	석궁	비고
			권총 소총	엽총 공기총 기타총						
1	화약류 수입신고 의무 위반	법 제9조 제5항				150				
2	모의총포 제조신고 의무 위반	법 제11조 제2항	150	150						
3	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 등의 휴대·운반	법 제17조 제1항	30	20	10		10	10	10	
4	총포의 보관·휴대· 운반 시 준수사항 위반	법 제17조 제3항	20	10						
5	화약류 폐기신고 의무 위반	법 제20조 제1항				100				
6	화약류 폐기 중지 명령 위반	법 제20조 제2항				100				
7	화약류운반신고필 증 휴대의무 위반	법 제26조 제3항				30				
8	화약류 제조·관리 보안책임자 선임·해 임신고의무 위반	법 제27조 제2항				100				
9	화약류 안정도시 험 결과보고의무 위반	법 제32조 제2항				100				
10	기준 미달 화약류 폐기의무 위반	법 제32조 제4항				150				
11	남은 화약류의 양 도·폐기의무 위반	법 제33조				100				
12	도난·분실 신고의 무 위반	법 제35조	100	50	20	50	20	20	20	
13	자체 안전교육계 획 미승인	법 제39조 제1항	100	100	50	100	50	50	50	
14	자체 안전교육 미 실시	법 제39조 제3항	100	100	50	100	50	50	50	
15	화약류 사용자의 수 안전교육계획 위반	법 제39조 제4항				100				
16	정기 점검결과 보고 의무 위반	법 제40조 제2항				50				
17	재해예방 등을 위	법 제44조	30	20	15	30	15	15	15	소지 외의

	한 보고명령 위반	조제3항								허가를 받은 자
			15	10	10	15	10	10	10	소지허가를 받은 자
18	소지자의 준수사항 위반	법 제47조 제3항	50	20	10	30	10	10	10	
19	장부 비치 및 기재의무 위반	법 제63조	70	50	50	70	50	50	50	
20	간판, 표지 설치의무 위반	법 제64조	50	25	25	50	25	25	25	
21	허가증 등의 반납의무 위반	법 제65조 제2항	50	30	20	50	20	20	20	소지 외의 허가면허를 받은 자
			20	15	10	20	10	10	10	소지허가를 받은 자
22	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무 위반	법 제65조 제3항	30	30	20	30	20	20	20	소지 외의 허가면허를 받은 자
			10							소지허가를 받은 자 (법인)
			20	10	10	10	10	10	10	소지허가를 받은 자 (개인)
23	폐업·휴업 등 신고의무 위반	법 제66조	50	30	30	50	30	30	30	